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대한 정비〉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32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대한 정비	2
【참고자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의 비교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0.

3. 회부연월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Ⅲ. 검토의견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대한 정비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u>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u> <u>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u> <u>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u>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	--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육아 부담 해소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4조의2²⁾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44조의3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간접적인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산정기준은 “1천만원 이하”와 같이 정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재산

1)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액의 100분의 20”과 같이 의무이행과 관련된 목적물 가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으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 법률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³⁾

「행정기본법」 제3장 행정작용(제14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는 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행정상 강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31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 부과 금액, 예고·통지·징수 등의 구체적인 절차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의 비교>

이에 개정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3)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관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4)의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가중 및 감경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4조의3제2항5)에서 부과 금액을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개정안과 같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와 가중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그 세부 사항(부과기준, 반환절차 등)은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응과 구체적·실질적 규정 마련을 위하여 하위 규정(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4)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5)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자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의 비교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7항과 동일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1조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준용규정 신설 단,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2항에 가중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1조제5항	<삭 제>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행정절차법 제31조제6항	<삭 제>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3항으로 이동	<삭 제>	